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사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9-105호

청구인 ○○○

피청구인 □□학교장

재결일자 2019. 10. 14.

### 주문

피청구인이 2019.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1학년 같은 반 학생이며,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호감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이 계속 호감을 표현하자,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나. 담임 선생님의 지도(서로 무시하라)로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서로 관심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로 변질되었고, 피해학생이 2019. 6. 17. 5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청구인과 B학생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B학생이 카터칼을 들고 청구인을 불러 피해학생을 쫓아가 카터칼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학생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6. 24.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 2019. 7. 8.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 양측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2019. 7. 10.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 조치하고, 피해학생도 가해학생 처분 조치하였다.

라. 2019. 7.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해학생은 2019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짹인 청구인에게 “사귀자”, “좋아한다” 등 때를 가리지 않고 표현하여, 청구인은 학업방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학생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나. 담임선생님은 청구인에게 피해학생과 반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노트에 기록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담임선생님이 피해학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다. 청구인은 담임선생님에게 짹을 마꿔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학폭위

를 열어줄 것을 말씀드렸으나, 담임선생님은 청구인에게 ‘부반장이고 남자니까 참아라’, ‘피해학생이 시비 걸면 대응하지 마라’라고 한 후 짹을 바꿔주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학생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책과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임선생님 때문에 예견된 사건으로, 청구인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의 담임선생님은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도하고 상담하였다고 한 바, 이 정도로 피해학생이 심각한 학생이고 수차례 지도하였음에도 별도의 제재나 벌을 주지 않았다면, 충분히 더욱 나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청구인이 희생양이 된 상황이다.

마. 피해학생은 모둠이나 주위 학생들과 거의 문제를 일으켰으며, 담임선생님이 짹만 바꿔 주었더라도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피해학생과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피청구인의 쌍방조치 처분은 동의할 수가 없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놀이를 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 하는 데 있어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0점, 청구인의 반성정도와 학생 및 보호자의 화해정도는 보통으로 하여 총 4점이 산정되었으나, 청구인의 선도 가능성은 고려하여 3호 교내봉사에서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으로 결정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의 선도 교육적인 목적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투명인간 놀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9. 6. 18. 담임선생님이 받은 청구인의 진술서에 ‘피해학생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데 피해학생도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라고 했고, 피해학생을 때리고 피해학생이 싫어하는 C학생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을 하였다.

라. 담임선생님은 3월부터 피해학생을 상담 및 지도하였고, 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을 알려주었으며, 잘못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상담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가 의심되어 피해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수치례 지도하였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호감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이 계속 호감을 표현하자,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으며, 담임 선생님의 서로 무시하라는 잘못된 지도로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서로 관심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로 변질되었고, 피해학생이 2019. 6. 17. 5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청구인의 B학생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B학생이 카터칼을 들고 청구인을 불

리 피해학생을 쫓아가 카터칼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학생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위 B학생이 불러 쫓아가기는 하였으나 가담한 것은 아님이 인정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담임 선생님의 청구인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로 무시하라는 잘못된 지도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서로에 대하여 투명인간 취급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청구인과 피해학생 상호간의 투명인간 취급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참고로 피해학생은 청구외 B학생이 카터칼을 들고 청구인을 불러 피해학생을 쫓아가 카터칼을 보여 주는 행위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며,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위 행위를 주로 하여 조사가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외 B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으

로 보지 않았다.

#### 나.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들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